

「자격기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교육부 (평생학습정책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현행화하여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·운영을 체계화하고,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자격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「경제교육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(안 제3조제2항)

나.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(안 제6조의3)

다.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현행화 (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 또는 「경제교육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(이하 “경제교육 주관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”을 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”을 “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인·재공인 신청서)(생략)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<u>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장 또는 「경제교육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(이하 "경제교육 주관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	제3조(공인·재공인 신청서)(생략)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<u>한국 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6조의3(공인받은 사항의 변경)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	제6조의3(공인받은 사항의 변경)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[별표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<u>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</u> (제2조제5항 관련)		<u>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</u> (제2조제5항 관련)	
주무부장관	민간자격 분야	주무부장관	민간자격 분야
기획재정부 장관	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	기획재정부 장관	(현행과 같음)
기획재정부 장관 (국세청장)	세무 관련 분야	기획재정부 장관 (국세청장)	(현행과 같음)
기획재정부 장관 (관세청장)	보세, 수출입 화물관리,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	기획재정부 장관 (관세청장)	(현행과 같음)
기획재정부 장관 (조달청장)	전자입찰,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	기획재정부 장관 (조달청장)	(현행과 같음)
기획재정부 장관 (통계청장)	통계의 기준 설정,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	기획재정부 장관 (통계청장)	(현행과 같음)
교육부장관	인적자원개발(외국어 관련), 학교 교육(유아교육, 초중등교육, 미술 음악교육, 특수교육, 독서논술, 영재교육 등), 평생교육, 학술, 기초과학(대학 관련), 진로, 상담 및 인정 관련 분야	교육부장관	(현행과 같음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기초과학(연구기관 관련), 과학기술 과학기술 진흥, 정보통신산업, 정보보호, 방송·통신 및 전파 연구·관리 관련 분야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(현행과 같음)
<신 설>		외교부장관	<u>외교,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외교, 국제관계 업무, 조약 기타 국제협정, 재외국민의 보호·지원, 재외동포정책의 수립, 국제정세의 조사·분석 관련 분야</u>
<신 설>		통일부장관	<u>통일 및 남북대화·교류·협력, 통일교육 관련 분야</u>
법무부장관	법무실무,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관련 분야	법무부장관	(현행과 같음)

<신 설>		국방부장관	국방, 군사 관련 분야
<신 설>		국방부장관 (병무청장)	징집·소집, 병무행정 관련 분야
<신 설>		국방부장관 (방위사업 청장)	방위력 개선사업,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 분야
행정안전부 장관	행정관리, 정보시스템관리, 옥외광 고, 정책분석평가, 개인정보보호, 안전교육 지도·관리, 방재 및 안전 관리 관련 분야	행정안전부 장관	----- 안전교육 지도·관리, ----- ---
행정안전부 장관 (경찰청장)	산업보안,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	행정안전부 장관 (경찰청장)	(현행과 같음)
행정안전부 장관 (소방청장)	소방 및 구조·구급 관련 분야	행정안전부 장관 (소방청장)	(현행과 같음)
문화체육관 광부장관	문화, 예술, 영상, 광고, 출판, 간행 물, 체육, 관광, 게임·영상 콘텐츠, 종교,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	문화체육관 광부장관	(현행과 같음)
문화체육관 광부장관 (문화재청장)	문화재 보존, 문화재 조사 및 문화 재 수리 관련 분야	문화체육관 광부장관 (문화재청장)	(현행과 같음)
농림축산식 품부장관	농산·축산, 가축위생, 식량·농지·수 리(水利), 식품산업,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	농림축산식 품부장관	(현행과 같음)
농림축산식품 부장관 (농촌진흥청장)	농업자재 관리, 농업기술 및 농촌 진흥 관련 분야	농림축산식품 부장관 (농촌진흥청장)	(현행과 같음)
농림축산식 품부장관 (산림청장)	산림자원, 산림경영, 산림이용 및 산림보호 분야	농림축산식 품부장관 (산림청장)	(현행과 같음)
산업통상자 원부장관	상업·무역·공업, 기술, 에너지, 품 질관리, 산업환경, 섬유, 기계항공, 철강화학, 디자인브랜드, 전력산업, 광물자원, 산업기술 및 에너지·지 하자원 관련 분야	산업통상자 원부장관	(현행과 같음)
<신 설>		산업통상자 원부장관 (특허청장)	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및 상표, 심사·심판 관련 분야
보건복지부 장관	보건위생, 생활보호, 자활지원, 사 회보장, 보험심사, 아동(영유아 보 육을 포함한다)·노인 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	보건복지부 장관	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	<u>보건복지부</u>	<u>방역·검역 등 감염병 관련 분야,</u> <u>각종 질병 관련 분야</u>
환경부장관	자연환경·생활환경의 보전, 환경오염 방지,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	환경부장관	(현행과 같음)
환경부장관 (기상청장)	기상 관련 분야	환경부장관 (기상청장)	(현행과 같음)
고용노동부장관	사무 관련 역량, 고용정책, 고용보험, 직업능력개발훈련, 근로조건, 근로자의 복지후생,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	고용노동부장관	(현행과 같음)
여성가족부장관	여성정책, 여성 권익증진, 청소년 및 가족(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)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) 관련 분야	여성가족부장관	(현행과 같음)
국토교통부장관	도시·도로 및 주택의 건설, 도로교통, 철도기술, 항공안전, 수자원 관리, 조경, 건축·건설 및 지적(地籍) 관련 분야	국토교통부장관	(현행과 같음)
해양수산부장관	해양환경, 해양조사, 해양자원개발, 해양안전심판, 어촌개발,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	해양수산부장관	(현행과 같음)
해양수산부장관 (해양경찰청장)	해양경비, 해양 안전관리, 해양 구조 및 구급, 수상레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	해양수산부장관 (해양경찰청장)	(현행과 같음)
중소벤처기업부장관	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 기술 지도 관련 분야	중소벤처기업부장관	(현행과 같음)
법제처장	법령입안·심사 법령해석 등 법제실무 및 법제분야 정보화 관련 분야	법제처장	(현행과 같음)
식품의약품안전처장	식품관리,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	식품의약품안전처장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<u>국가보훈처장</u>	<u>국가유공자, 보훈, 제대군인의 보상·보호 및 보훈선양 관련 분야</u>
<u><신 설></u>		<u>인사혁신처장</u>	<u>공무원의 인사·윤리·복무 및 연금 관련 분야</u>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	인터넷,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분야	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	(현행과 같음)
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	소비자보호 관련 분야	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	(현행과 같음)
금융위원회위원장	금융서비스, 회계,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	금융위원회위원장	(현행과 같음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	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관련 분야	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	(현행과 같음)
<신 설>		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	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
<신 설>		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	원자력,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분야
감사원장	감사 관련 분야	감사원장	(현행과 같음)
대법원장	재판 및 소송 관련 분야		<삭 제>
국가정보원장	정보관리 및 보안 관련 분야		<삭 제>
<신 설>		※ 비고 :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장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부조직 및 직제 관계 법령을 따른다.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381